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2. 4. 29.(금)

■ (언론 동향) 2022.4.28. "뉴스1" 보도

○ 원자재가 급등에 하도급대금 분쟁 ↑

- 계약때 원가변동 조항 확인을
-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성립율 69%..조정금액 매년 증가추세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청과 하도급 업체 간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원자재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사건은 지난 한해 33건이 접수돼 2020년(14건)보다 2배 넘게 늘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올해 1분기엔 7건이 접수돼 지난해 1분기 접수건수(2건) 대비 250%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정보 동향 등에 따르면 주요 원자재의 연평균 증가율(2020년 3월~2022년 3월)은 전기동(구리) 50.6%, 알루미늄 53.5%, 니켈 75.4%, 주석 75.7% 등이다.

주요 접수 사례는 원청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공급원가 상승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조정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등이다.

2019년부터 3년간 조정원에 접수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신청 48건 중 성립건수는 33건으로 성립율은 68.8%였다. 2021년은 조정요건이 충족된 21건 중 18건이 성립(85.7%)됐다.

조정원은 하도급업체 피해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원청과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 공급원가 변동 관련 대금조정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 뒤엔 관련 원자재 가격동향을 확인해 분쟁발생 시 납품단가 원가정보를 제시할 것을 안내했다.

납품단가 조정 관련 원청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원한다면 공정위 홈페이지 '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익명제보를 원한다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 서미선 기자 >